

검 토 보 고 서

안 건 명	부서명	페이지
1.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	재무과	1

(2014. 2. 28)

마포구의회 행정건설위원회
[전문위원 이 진 표]

1. 안 건 명

가.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」 일부개정조례안

2. 제출일자 및 제출자

가. 제출일자 : 2014년 2월 17일

나. 제 출 자 : 마포구청장

3. 의안 회부일자

가. 2014년 2월 19일

나. 의안번호 : 14-13

4. 관련근거

가.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

제5조(공유재산의 구분과 종류), 제32조(대부료)

나.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」

제13조(사용, 수익허가의 방법) 제3항제18호,

제31조(대부료율과 대부재산의 평가) 제1항,

제31조의2(대부계약의 갱신 시 대부료),

제32조(대부료의 납부기한) 제2항·제3항,

제81조(변상금) 제1항, 제82조(과오납금반환 가산금)

다. 학교용지 대부료율 적용 관련 제도개선 협조 권고

(2013.07.03, 국민권익위원회 행정문화교육민원과-5423,)

5. 개정이유

- 가.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」의 개정(2013. 6.21.)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위임된 사항 정비
- 나.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(공유지 대부료율 조정) 반영
- 다. 개인 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구유지에 대한 수의매각 가능점유 기준일을 완화하여 주민부담을 경감시키는 등 공유재산 활용의 공공성을 제고
- 라. 기타 법제처의 「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」에 맞게 조문상 용어 정비

6. 주요내용

- 가. 행정재산의 수의계약 대상 신설(안 제17의2)
- 나.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 반영하여 대부료 요율 적용 항목 신설 (안 제25조)
- 다. 대부료, 변상금의 분할납부 이자율 및 과오납금 반환가산금 이자율 (연 3%)신설 (안제31조의2, 제88조, 제88조의2)
- 라. 매각대금과 교환차금의 분할납부 시 이자율을 현행 4%에서 3%로 인하(안 제34조, 제34조의2)
- 마. 개인소유 건물이 점유한 구소유토지 수의계약 기준일 완화(안 제36조)
 - “1989년 1월 24일 이전”에서 “2003년 12월 31일 이전”으로 완화
- 바. 법제처의 「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」에 따른 용어, 표현 수정

[검토결과]

-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2013.06.21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」(이하 시행령)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고, 국민권익위원회의 「학교용지 대부료율 적용 관련 제도개선 권고사항」을 반영하며, 개인 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구 소유 토지에 대한 수의매각 가능 점유 기준일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으로
- 주요내용을 살펴보면, 시행령 제13조제3항제18호에 의거 국제기구 및 비영리 민간단체가 사무실을 신설하는 경우 행정재산을 수의계약으로 사용·수익 할 수 있도록 신설(안 제17의2)하고,
- 2013.07.03 국민권익위원회의 「학교용지 대부료율 적용 관련 제도개선 권고사항」인 “사립학교와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이 교육활동을 목적으로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대부료율을 1,000분의 25이상 적용”의 내용을 현행 조례에 신설(안 제25조제4항제5호)하였고,
- 시행령 제32조제2항 및 제3항에 의거 벤처기업과 외국인투자기업이 대부료를 분할납부하는 경우 연 3%의 이자율 부과 규정을 신설(안 제31조의2)하였으며, 2013.10.04 개정된 「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」(이하 시조례) 제36조와 제36조의2 관련하여 매각대금(조례 제34조)과 교환차금(조례 제34조의2) 분할납부 시 이자율을 현행 4%에서 3%로 인하 하였으며, 변상금과 과오납금 반환가산금 이자율(3%)을 신설(안 제88조제3항, 제88조의2)하는 등 주민부담 완화 및 국유재산과의 형평성을 유지하는 한편

- 시조례 제38조에 의거 구 소유 토지에 대한 수의매각 가능 절유 기준
일을 “1989년 1월 24일 이전”에서 “2003년 12월 31일 이전”으로 완화
(안 제36조)하였음
- 따라서, 동 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 및 시조례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주민부담을 경감시키고 공유재산 활용의 공공성 제고를 통해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 주거생활 안정에 기여함은 물론, 그 밖에 법제처의 「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」에 맞게 보완하고 개선하려는 것으로서, 입법예고 및 마포구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으로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.

관 계 법령 및 근거

[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]

제5조(공유재산의 구분과 종류) ① 공유재산은 그 용도에 따라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한다.

② "행정재산"이란 다음 각 호의 재산을 말한다.

1. 공용재산 :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무용·사업용 또는 공무원의 거주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 중인 재산
2. 공공용재산 :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공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 중인 재산
3. 기업용재산 : 지방자치단체가 경영하는 기업용 또는 그 기업에 종사하는 직원의 거주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 중인 재산
4. 보존용재산 : 법령·조례·규칙에 따라 또는 필요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보존하고 있거나 보존하기로 결정한 재산

③ "일반재산"이란 행정재산 외의 모든 공유재산을 말한다.

제32조(대부료) ① 일반재산의 대부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과 산출방법에 따라 매년 대부료를 징수한다.

② 제1항의 대부료는 그 전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한꺼번에 내야 한다. 다만, 대부료 전액을 한꺼번에 내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수준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.

③ 제2항 단서에 따라 분할납부하게 하는 경우 일정한 금액 이하의 보증금을 예치하게 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피보험자로 하는 이행보증보험을 체결하게 할 수 있다.

[전문개정 2008.12.26]

[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]

제13조(사용, 수익허가의 방법) ③ 법 제20조제2항 제1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"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.

18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구 또는 단체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구 또는 단체가 사용하도록 허가하는 경우
- 가. 국제기구(국제연합과 그 산하기구·전문기구, 정부 간 기구, 준 정부 간 기구를 말한다)
 - 나. 50개국 이상의 서로 다른 국가의 회원을 보유한 비영리민간단체

제31조(대부료율과 대부재산의 평가)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일반재산의 대부료는 시가를 반영한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10 이상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, 월할 또는 일할로 계산할 수 있다.

제31조의2(대부계약의 갱신 시 대부료) 법 제3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대부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갱신된 대부기간의 연간 대부료는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.

1. 제31조에 따라 산출한 대부료
2.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대부료

갱신하기 직전 연도의 연간 대부료	×	제31조제2항에 따라 산출한 해당 연도의 재산가격 제31조제2항에 따라 산출한 갱신하기 직전 연도의 재산가격
-----------------------	---	---

제32조(대부료의 납부기한) ② 법 제32조제2항 단서에 따라 연간 대부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와 「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」에 따른 벤처기업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 2퍼센트 이상 6퍼센트 이하의 이자를 붙여 연 4회의 범위에서 대부료를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.
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에는 최초로 준공된 건물 등의 준공일부터 6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 2퍼센트 이상 6퍼센트 이하의 이자를 붙여 대부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.

제81조(변상금) ① 법 제81조에 따른 변상금은 그 재산을 무단으로 점유하거나 무단으로 사용·수익한 기간에 대하여 회계연도별로 제14조 및 제31조에 따라 산정한 사용료 또는 대부료 합계액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. 다만, 변상금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

연 2퍼센트 이상 6퍼센트 이하의 이자를 붙여 3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.

제82조(과오납금반환 가산금) 법 제82조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"란 연 2퍼센트 이상 6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이자를 말한다.

[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]

제36조(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) ①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일반재산 매각대금을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3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. <개정 2009.5.28., 2012.3.15., 2013.10.4>

1.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재산을 국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매각할 때
2. 교육청이 직접 학교용지로 사용할 재산을 해당 교육청에 매각할 때
3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에게 9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매각하는 때
4. 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 지식산업센터, 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 제27조에 따른 공업단지 개발사업용지, 「기업 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」 제14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의 공장 용지 및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농공단지, 서울특별시가 유치한 공장용지에 필요한 토지를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
5.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자에게 재산을 매각하는 때
6. 제38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라 매각할 때
7. 서울특별시가 건립한 아파트, 연립주택, 공영주택 및 그 부지를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에게 매각할 때
8.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2조제2호나목의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을 위한 정비구역 안의 토지(시장이 같은 법에 따라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 건물로 점유·사용되고 있는 토지에 한한다)를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점유·사용자에게 매각할 때

②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5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3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<개정 2009.5.28., 2012.3.15., 2013.10.4>

1. 영 제38조제1항 제4호·제6호·제7호·제12호 및 제14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 할 때
 2. 시장의 필요에 의하여 매각재산을 일정기간 동안 시장이 계속하여 점유·사용할 목적으로 재산 명도일과 매각대금의 납부기간을 계약 시에 따로 정하는 경우와 계약 시에 재산 명도일을 연장할 때
 3. 그 밖에 공익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재산으로 일시에 전액을 납 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재산
 4. 「사회복지 사업법」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또는 「공익법인의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」의 적용을 받는 법인에게 해당 사업목적에 필요한 재산을 매각하는 때
 5.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2조제2호나목의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을 위한 정비구역 안의 토지(시장이 같은 법에 따라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건물에 의하여 점유·사용되고 있는 토지에 한 한다)를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점유·사용자로부터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그 권리·의무를 승계한 자에게 매각하는 때
- ③ 「외국인투자 촉진법」 제13조제4항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등의 사업목적상 일반재산이 필요한 때에는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3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.
<개정 2009.5.28, 2011.7.28., 2012.3.15., 2013.10.4>
- ⑤ 삭제 <2007.10.1>

제36조의2(교환차금의 분할납부)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공유재산과 교환할 때 발생하는 교환차금은 5년 이내의 기간으로 교환차금의 잔액에 연 3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.<개정 2012.3.15, 2014.1.9> [본조신설 2011.7.28] [제목개정 2014.1.9]

제38조(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) 영 제38조제1항 제23호에 따른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재산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.
<개정 2009.5.28., 2013.10.4, 2014.1.9>

1. 2003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서울특별시 소유가 아닌 건물이 있는 일단의 소규모 토지(특별시·광역시의 동지역에서는 300제곱미터 이하, 시의 동지역에서는 500제곱미터 이하, 광역시·시·군의 읍·면지역에서는 1,0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)를 그 건물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

2~8호 생략

[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]

14-1

국 민 권 익 위 원 회

의 결

민원표시 2BA-1303-121455 공유지 대부료율 조정 및 대부료 반환

신청인 학교법인 ○○재단

경북 포항시 ○○면 ○○리

대표자 이사장 ○○○

피신청인 경상북도 포항시장

관계기관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장 및 226개 기초지방자치단체장

주 문 1.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이 대부받아 학교용지로 사용하고 있는 경북 포항시 ○○면 ○○리 ○○ 외 5필지에 대하여 포항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8조 제3항 제1호를 준용하여 대부료율을 재조정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신청인이 기 납부한 대부료 중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5년분(2008년부터 2012년까지)에 대해 과다 납부한 금액을 환급할 것을 의견표명한다.

2. 피신청인과 관계기관에게 공유지를 학교용지 등 행정목적의 수행을 위해 대부하는 경우 1,000분의 25 이상의 요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당해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관리조례의 대부료율 규정('공공·공공용으로의 사용을 위한 경우')을 개정할 것을 제도개선 권고한다.

신청취지 주문과 같다.

이 유 별지와 같다.

의 결 일 2013. 7. 1.

위원 신영기 위원 이원일 위원 이희정

(별지)

이유

1. 신청 원인

신청인은 피신청인으로부터 경북 포항시 ○○면 ○○리 ○○ 외 5필지(이하 '이 민원 토지'라 한다)를 대부 받아 현재까지 공시지가의 1,000분의 50에 해당하는 대부료를 납부하고 있으나, 교육사업이라는 공공목적으로 이 민원 토지를 사용하고 있으니 「포항시 공유재산 관리조례」(이하 '포항시 조례'라 한다) 상 '공용·공공용으로의 사용을 위한 경우'로 보아 대부료율을 1,000분의 25로 조정해 주고, 1,000분의 50으로 잘못 적용받아 과다 납부한 대부료를 반환하여 달라.

2. 피신청인의 주장

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(이하 '공유재산법'이라 한다) 제5조가 공용 또는 공공용 재산을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,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사립학교가 사용하는 공유지는 포항시 조례 제28조 제3항 제1호의 '공용·공공용으로의 사용을 위한 경우'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대부료율을 1,000분의 25로 조정하거나 기 납부한 대부료를 환급할 수 없다.

※ 조치결과

경상북도교육청(감사부서)에서 감사 결과 후, 신청인(학교법인 ○○재단)은 피신청인(경상북도 포항시장)으로부터 기 과다 납부한 대부료(이자 포함)는 과오납 청구(최근 5년)를 반환받음.

- 감사결과 -

기획재정부 법률질의(2007. 6. 19.)에 따르면 사립학교 내 국유재산을 학교시설로 사용하는 경우 행정목적의 수행에 필요한 경우로 보아 대부료율을 1천분의 25이상으로 적용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니 신청인은 대부료율을 1천분의 25이상으로 부과한 관계기관(포항시, 한국자산관리공사)과 협의하여 대부료를 계약하고, 기 과다납부한 대부료(이자포함)는 과오납 청구(최근 5년간)환수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함.